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1. 13 선고 2020가단262872 판결 [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영배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10. 30.

판결 선고 2020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상현

별지